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44 발의연월일: 2022. 7. 1.

발 의 자:김학용・金炳旭・태영호

백종헌 · 김용판 · 정운천

김미애 • 이주환 • 안병길

박성중 • 김성원 • 구자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직불제도는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추가규정함으로써 실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임에도 과거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의 불만이 상당한 실정임.

또한 공익직불제도가 농정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익가치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선택직불제도의 적절한 운영이 관 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본직불제도와 구별되는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수준을 가진 다양한 선택직불제도를 확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 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에서 과거 직불금 지급 실적을 삭제하고, 선택직불제도로 고령중소농업인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 청년농업인직불제도, 식량안보직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농업인과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법률 제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령중소농업인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 5. 청년농업인직접지불제도
- 6. 식량안보직접지불제도
- 7.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 8.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지등) ①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	
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	
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	
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	
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u>.</u>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	
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이용된 <u>농지등</u>	<u>농</u>
<u>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u>	<u>지등</u>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	
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	
<u>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u>	
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	

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 나. (생략)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경우.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

	가.•나. (현행과 같음)
2.	
	<u>농지등</u>

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 된 것으로 본다.

가. · 나. (생 략)

-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 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 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 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 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 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②·③ (생 략)
- 및 종류) ① (생 략)
 -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 하다.
 -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u><신</u> 설>

③ • ④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3.			
	<u>농</u> 지등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고령중소농업인농지이양은퇴 직접지불제도
- 5. 청년농업인직접지불제도
- 6. 식량안보직접지불제도
- 7.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 8.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 ③ ④ (현행과 같음)